

고령자 고용지원금



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,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



지원대상

-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, 사회적기업
 - *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(www.mme.or.kr에서 확인)
 - * 지원제외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,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,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


지원요건

- (기업요건)
 - ① 사업가동기간이 1년이상 일 것
 - ② 60세이상인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
- (고령자 기준)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
 - * (지원제외자)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(거주(F-2)·영주(F-5)·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), ③ 최저임금 미만자, ④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

지원수준 및 기간

-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
(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% 및 최대 30명 한도)

신청기간

- (최초)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동안 제출신청
 - 지원금은 분기별 신청이므로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

신청방법

-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)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·방문 신청 또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
 - *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에서 확인 가능